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53권
2012년 2월 pp.207~229

논문접수일 2012.01.31
논문심사일 2012.02.13
심사완료일 2012.02.23

영국 보험계약법의 주요 개혁동향

-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를 중심으로 -

신 건 훈*

Ⅰ. 서 론
Ⅱ.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의 성격 및 적용범위
Ⅲ. 영국 판례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
Ⅳ.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
Ⅴ. 결 론

주제어 :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 사기적인 보험금청구, 영국 법률위원회, 영국 보험계약법 개혁

Ⅰ. 서 론

영국 보험법 상 최대선의의무는 계약이행단계에서도 유효한 상호적인 의무로서 성격을 갖지만, 계약체결 전 의무와는 달리 적용기준의 엄격성이 완화되고 적용범위는 제한되는 단지 선의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영국 보험법 상

* 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계약체결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최대선의의무의 성격,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원칙은 과거 30여년간 영국 법원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립되었으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에 관한 법원칙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최근 영국 법률위원회는 선의의무에 관한 법원칙의 불확실성 및 불공정성이 보험업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며,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국 보험법의 위상을 하락시킨다는 인식 하에 관련 법률의 개혁을 권고하는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1)]

영국 법률위원회는 2010년 3월에 발표한 쟁점보고서(Issue Paper No. 6)[2)]를 통하여 계약이행단계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선의의무와 관련하여 쟁점사안에 대한 개혁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동전의 이면으로써 법률위원회는 2010년 7월 피보험자가 계약이행단계에서 부담하는 선의의무와 관련하여 쟁점사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집단 및 학계의 반응을 수렴한 후, 2011년 12월에 최종권고안을 제시하였다.[3)]

본 논문은 전술한 보고서 상 개혁권고안을 중심으로 계약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선의의무의 범위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영국 보험계약법의 개혁동향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의 성격, 적용범위 및 의무위반에 대

---

1) 영국 법률위원회는 2007년 6에 발표한 중간보고서를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전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을 검토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집단의 반응을 수렴한 후, 2009년 12월 소비자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고지의무 및 부실표시방지의무)에 대한 개혁안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English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Misrepresentation, Non-Disclosure and Breach of Warranty by the Insured*, Joint Consultation Paper, LCCP No. 182, 2007. 6 ; English and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 319, 2009. 12). 동 보고서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건훈, "영국 보험계약법 상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주요 개혁동향", 「무역상무연구」제49권, 2011. 2 참조.

2)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Joint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 Damages for Late Payments and the Insurer's Duty of Good Faith*(Issues Paper 6), 2010. 3

3)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 The Insured's Post-Contract Duty of Good Faith(Issues Paper 7)*, 2010. 7 (이하 IP 7이라 칭함) ;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 Consultation Paper No. 201*(이하 LCCP 201이라 칭함).

한 구제수단에 관한 법리를 고찰한 후, 법률위원회가 제안하는 개혁권고안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가 적용되는 특정례로써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만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계약법리의 분석에 중점을 두며, 형법상 사기는 검토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Ⅱ.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의 성격 및 적용범위

1.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의 성격

영국 법원은 최근 30여 년 간 치열한 법리 논쟁을 통하여 계약체결 전 최대선의의무의 성격, 적용기준 및 적용범위에 관한 법원칙을 상당히 명확하게 정립하였으나,[4] 영국 보험법 상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5]의 성격, 적용범위 및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법원칙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다만 기존 판례법 상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6] 첫째, 최대선의의무는 상호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험계약자가 일방적으로 최대선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MIA 1906 제17조의 규정 상 의무부담자인 "어느 일방"(either)은 보험계약의 양당사자, 즉 보험계약자뿐만 아니라 보험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개

---

4)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최대선의원칙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무역상무연구」 제14권, 2000. 8 참조.

5) 본 논문에서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post-contract duty of (utmost) good faith)라는 용어는 계약의 성립 후, 즉 계약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최대)선의의무를 지칭한다.

6)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혁동향-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3호, 2011. 9, pp. 50-55 ;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 The Insured's Post-Contract Duty of Good Faith(Issues Paper 7)*, 2010. 7 (이하 IP 7이라 칭함), paras. 1.6-1.8 참조.

념이기 때문에 조문의 적절한 해석 상 계약당사자 모두가 선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7]

둘째, 보험계약 상 최대선의의무는 계약체결 전단계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의무가 아니라, 계약체결 후, 즉 계약의 이행단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계약당사자의 행동양식을 지배하는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8] 최근 영국 법원은 제17조가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멸하지 않고, 계약이행단계에서도 효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지배적으로 취하고 있다.[9]

마지막으로 최대선의의무는 계약이행단계에서 성격 상 선의의무로 전환된다. 계약체결단계에서 최대선의의무는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엄격한 객관주의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갖는 반면,[10] 계약이행단계에서 최대

---

7) 영국 보험법 상 최대선의원칙을 최초로 정립한 판례로서 평가받는 *Carter v. Boehm* 사건에서 Lord Mansfield는 "보험자가 선박의 도착사실을 은밀하게 인지하였으나, 이를 은폐한 상태에서 당해 선박에 대한 항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의의무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보험자의 선의의무를 강조하였다((1766) 3 Burr. 1905, 1909). Lord Mansfield에 의하여 설정된 선의의무의 상호성은 근래 들어 *Banque Financiere de la Cite SA v. Westgate Insurance Co. Ltd.* 사건([1990] 1 QB 665(CA) ; [1991] 2 AC 249(HL))에서 보험법원칙으로서 확정되었다.

8)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의 존속기간 및 지속성에 관한 찬반논쟁은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 상 지속적인 최대선의의무의 범위",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6. 11, pp. 163-170 참조.

9) *Black King Shipping v. Massie(The Litsion Pride)* [1985] 1 Lloyd's Rep. 437 ; *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Insurance Co. Ltd.(The Star Sea)* [2001] UKHL 1 ; [2003] 1 AC 469.

10) MIA 1906 제17조 상 '최대의'(utmost)라는 수식어는 선의의무의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에 관한 무한한 가능성을 암시하며, '최대선의'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률 및 선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법률의 문제이다. 한편 J.P. Lowry는 선의의무에 '최대'(utmost)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9세기 법률의 발전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애초에 *Carter v. Boehm* 사건에서 Lord Mansfield는 단지 '선의'(good faith)의무만을 언급하였으나, 이후 19세기 일련의 판례에서 법원이 보험계약자의 의무부담을 확대·강화시켰고, Lord Mansfield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선의의무는 최대선의의무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보험계약자는 악의적인 의도 없이 선량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가혹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선의의무에 '최대'라는 개념의 추가는 합리적인 정직성 및 성실성을 초월하는 개념의 의무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J.P. Lowry, "Redrawing the parameters of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Current Legal Problems(Vol. 60),* 2007, pp. 338-407 ;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Joint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

선의의무는 "당해 순간에 적절한 수준으로"[11] 상당히 완화된 적용기준 및 제한적인 적용범위를 갖는 단지 선의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2. 의무의 적용범위

영국 법원은 지난 20여년동안 계약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선의의무의 범위를 상당히 제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의무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The Mercandian Continent* 사건[12]에서 Longmore LJ는 판례법 상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6개의 상황을 상정하였다.[13] 즉,

①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② 피보험자가 계약 상 위험의 변경(variation of the contractual risk)을 모색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갱신(renewal)을 모색하는 경우
④ 피보험자가 담보유지조항(held-covered clause)에 의존하는 경우
⑤ 피보험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조항에 의거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또는
⑥ 책임보험 하에서 책임보험자가 클레임에 대한 항변권을 양수한 경우

③의 경우, 계약의 갱신은 영국 보험법 상 새로운 계약의 체결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는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보다는 계약체결 전 선의의무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⑥의 경우, 의무는 주로 보험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③과

Damages for Late Payments and the Insurer's Duty of Good Faith(Issues Paper 6), 2010. 3, paras. 4.9-4.10).

11) M. Clarke,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3rd edn.), LLP, 1997, para. 27-1A ; Andre Naidoo & David Oughton, "The confused Post-formation Duty of Good Faith in Insurance Law: From Refinement to fragmentation to Elimination", *Journal of Business Law*, 2005. 5, p. 349.

12) *K/S Merc-Scandia XXXXII v. Certain Lloyd's Underwriters(The Mercandian Continent)* [2001] EWCA Civ. 1275 ; [2001] 2 Lloyd's Rep. 563, 571-572.

13) IP 7, paras. 6.4-6.49 참조.

⑥의 상황은 본 논문의 주제와 무관하기 때문에 논외로 취급한다.

②의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의 변경과 관련되는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며, 따라서 선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계약변경의 경우 계약의 갱신과 유사한 선의의무가 적용되며, 따라서 계약의 변경과 관련하여 선의의무는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로서의 성격보다는 계약체결 전 선의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14]

④에 해당하는 담보유지조항(held-covered clause)의 경우, 이러한 조항의 적용은 보통 2가지 조건, 즉 보험자에 대한 즉시 통지 및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추가보험료의 약정을 전제로 적용된다.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특정 정보의 통지와 관련하여 선의의무의 준수가 요구된다. 그러나 다수 판례 상 담보유지조항 하에서 제공되는 추가 커버는 별개의 합의(계약)를 창출하는 계약의 변경이라는 견해가 지지된다.[15]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자가 담보유지조항에 의존하는 경우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취급된다는 판례법의 입장을 지지한다. 담보유지조항에 대한 의존과 관련하여 초래되는 일체의 선의의무는 계약변경 시 초래되는 의무와 동일하며, 따라서 계약체결 전 선의의무로서 취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16]

한편 계약조항에 의거하여 피보험자가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⑤의 경우, 피보험자의 선의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명시계약조항에 의거하여 보험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특정위험의 변경사항을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이러한 의무의 위반 시 보험자가 계약의 취소권을 갖는다고 규정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법률위원회는 해당 조항은 면책조항으로서 협소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러한 통지조항과 관련하여 선의의무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제안한다.[17]

영국 법률위원회의 제안에 의하면 상기 6개의 상황 중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뿐이다.[18]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가 향후 어떠한 상

---

14) IP 7, paras. 6.8-6.11 참조.

15) *Iron Trades Mutual Insurance Co. Ltd. v. Comphanhia de Seguros Imperio* (1990), Unreported(QB) ; *The Star Sea* [1997] 1 Lloyd's Rep. 360, 370.

16) IP 7, paras. 6.12-6.14 참조.

17) IP 7, paras. 6.47 참조.

18) IP 7, para. 6.49.

황 및 피보험자의 행위에 적용될지 알 수 없으나, 현재 상황에서 영국 법률위원회는 의무의 적용범위가 보험금청구 상황에 한정된다고 제안한다.

Ⅲ. 영국 판례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

1. 주구제수단

1) 구제수단에 관한 명시적 계약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대다수 보험증권은 명시적인 "사기금지조항"(fraud clause)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활용가능한 보험자의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사기금지조항의 문구는 오랫동안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왔으나, *Insurance Corporation of the Channel Islands Ltd. v. McHugh* 사건[19]에서는 사기금지조항의 전형적인 일례로서 "사기-여하한 경우라도 보험금청구가 사기적인 경우 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가 보험계약 상 특정 편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기적인 계략이나 수단을 사용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행위 또는 묵인에 기인하여 파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 상 일체의 편익(all benefits)은 박탈되어야 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었다.

이 사건에서 Mance J는 해당 조항의 해석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경우 사기에 관계되는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보험계약 상 편익을 박탈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으나,[20] 이 판결이 보험계약 상 "일체 편익의 박탈"이라는 문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이 조항에서 "일체 편익의 박탈"이란 한편으로 사기가 개입된 보험금청구와 관련되는 일체 편익 및 사기 이후에 발생한 편익의 박탈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다른 한

19) [1997] 1 LRLR 94, 98.
20) *Ibid.*, 135.

편으로는 동 보험계약 하에서 과거 합법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보험자의 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소급적인 편익의 박탈로 해석될 수도 있다.[21]

전술한 문언의 해석문제와 별개로 사기금지조항의 내용에 대한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의문의 여지를 갖는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보험자가 사기금지조항에 의거하여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사기가 개입된 청구권의 박탈보다 더욱 확장된 구제수단, 예를 들면 소급적인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다. 영국 법률 상 보험계약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하여 스스로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향유하지만, 특히 소비자보험의 경우 계약관계의 형평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22]

둘째,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약정에 의하여 사기에 대한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쟁점으로 취급한 판례는 없다. 영국 법률 상 계약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향유하지만, 보통법 상 공서의 원칙에 의거하여 계약당사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23]

2) 명시적 계약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영국 판례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명시조항의 부재 시에도 보험자의 구제권은 인정된다. 영국 법원은 최근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선의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법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취소라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구제수단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복잡한 법리 및 법적 불확실성의 창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24] 영국 판례법 상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사기방지의무의 법적 성격은 묵시계약조항, 최대선의의무 및 공서의 원칙이라는 독자적인 보통법원칙 등 다양한 법원칙 하에서 규명되었고,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는 해당 조항, 의무 또는 원칙의 위반으로 규정되어 왔다.[25]

---

21) IP 7, paras. 4.6-4.8.

22) IP 7, paras. 4.10-4.12 참조.

23) IP 7, paras. 4.13-4.17 참조.

24) 이러한 영국 법원의 노력은 "판사 및 법학자를 똑같이 곤란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John Lowry, "Redrawing the parameters of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Current Legal Problems 2007(Vol. 60)*, pp. 338-407).

(1) 묵시계약조항의 위반

Orakpo v. Barclays Insurance Services Co. Ltd. 사건[26]에서 항소법원의 다수 판사는 보험계약 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시적인 사기금지조항과 유사한 계약조항이 보험계약에 묵시되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offmann LJ는 "동 취지의 명시조항이 보험계약에 삽입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보험계약 상 그러한 취지의 명시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적인 견해 상, *Britton v. The Royal Insurance Co.* 사건[27]과 관련한 Willes J의 언급은... 그러한 조항이 법률에 의거하여 묵시되어 있다고 판결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제공한다. 즉, 반대되는 약정의 부재 시 동 묵시조항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언급함으로써,[28] 보험계약 상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기금지조항이 법률의 운용(operation of law)에 의하여 보험계약에 묵시되어 있으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는 해당 묵시계약조항의 위반을 구성한다는 계약적인 분석방법을 지지하였다. 상기 판결과 마찬가지로 계약적인 분석방법이 채택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사기가 개입된 보상청구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지만, 동일한 보험계약 하에서 발생한 사기 이전의 합법적인 보상청구권은 상실하지 않는다.[29]

그러나 *Orakpo* 사건에서 채택한 계약에 의거한 분석방법은 후술하는 *The Star Sea* 사건에 대한 상원의 판결 결과, 더 이상 유효한 판례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사기방지의무는 묵시계약조항이 아니라, 보통법원칙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Lord

---

25) IP 7, paras. 4.19-4.51 참조.

26) [1994] CLC 373.

27) (1866) 4 F. & F. 905, 909.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선의의무의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결한 최초의 판례인 이 사건에서 Willes J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가옥에 방화한 경우, 피보험자는 당연히 보험금을 회수할 수 없다. 이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고의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경우 피보험자는 일체의 편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법원칙은 정의(justice) 및 건전한 공서양속(sound policy)에 의거한 것이다. 법원칙 상 사기적인 의도로써 보험금을 청구한 자는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고의적인 허위성 및 사기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에 상관없이 피보험자는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라고 언급하였다.

28) [1994] CLC 373, 383.

29)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 상 지속적인 최대선의의무의 범위",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2006. 11), p. 180.

Hobhouse는 "*Orakpo* 사건에서 채택된 계약적 분석방법(contractual analysis)이 완전한 권위를 가진 판례법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하였다.[30]

(2) MIA 1906 제17조에 근거한 최대선의의무의 위반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와 관련되는 일부 판례에서 보험자는 MIA 1906 제17조를 직접 원용하면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선의의무 위반을 구성하며, 따라서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1] *The Litsion Pride* 사건[32]에서 Hirst J는 "최대선의의무는 효력을 완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담보(warranty)조항 상 항해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선의의무는 비난받을만한(culpable) 부실표시 및 불고지에 대하여 확대적용된다"라고 언급하면서, 계약체결 전 선의의무와 유사한 수준의 선의의무가 계약체결 후에도 존속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계약적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이 판결은 더 이상 유효한 판례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즉, *The Star Sea* 사건[33]에서 상원은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였고, 보험자가 계약이행단계에서의 선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체결시점으로 소급하여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을 제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상원은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가 계약체결 전 의무와는 상이한 내용을 갖는다고 인식하였다. Lord Scott는 계약이행단계에서 선의의무가 "정직의무(duty of honesty)로 제한되어야만 한다. 개인적인 견해 상 보험금청구단계에서 피보험자가 악의로써 행동하지 않는 한, 선의의무의 위반

---

30) *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Insurance Co. Ltd. and Others(The Star Sea)* [2001] UKHL 1 ; [2003] 1 AC 469, 66.

31) *Black King Shipping Corporation v. Massie(The Litsion Pride)* [1985] 1 Lloyd's Rep. 437 ; *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Insurance Co. Ltd. and Others(The Star Sea)* [2001] UKHL 1 ; [2003] 1 AC 469 ; *K/S Merc-Scandia XXXII v. Certain Lloyd's Underwriters(The Mercandian Continent)* [2001] EWCA Civ. 1275 ; [2001] 2 Lloyd's Rep. 563 ; *Agapitos and Another v. Agnew and Others (No. 1) (The Aegeon)* [2002] EWCA Civ. 247 ; [2003] QB 556.

32) *Black King Shipping Corporation v. Massie(The Litsion Pride)* [1985] 1 Lloyd's Rep. 437, 512.

33) *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Insurance Co. Ltd. and Others(The Star Sea)* [2001] UKHL 1 ; [2003] 1 AC 469.

으로 귀결될 수 없다"[34]고 결론내리면서, 계약이행단계의 선의의무는 계약체결단계에서의 엄격하고 객관적인 선의의무와는 달리 악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의무로 전환된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이러한 해석방법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사기적인 청구가 선의의무의 위반으로 귀결되는 경우, 제17조에 의거하여 사기에 대한 구제수단은 계약의 취소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Lord Hobhouse는 "제안된 원칙의 적용, 특히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계약의 취소가 일방당사자에 대해서만 이익을 제공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경우, 당해 원칙이 정확하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은 정당하고, MIA 1906 제17조로부터 도출된 계약당사자의 권리관계가 정확하게 해석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언급하면서,[35]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계약의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Lord Hobhouse는 다수의 전통적인 판례에서 취소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계약 상 일체의 편익" 또는 "계약 상 일체의 청구권"의 박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계약의 취소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박탈만을 초래한다는 과거 판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36]

(3) 보통법 상 공서의 원칙 적용

The Aegeon 사건에서 Mance LJ는 *The Star Sea* 사건에 후속하여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제수단에 관한 법원칙의 규명을 시도하였다. 그는 우선 "지난 20여년간 다수의 보험분쟁이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반복적인 검토를 요하는 것이었다. 관련 법원칙이 보통법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MIA 1906 제17조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불확실성은 제17조 상 구제수단의 가혹한 성격과 연관된다"고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법원칙의 도출이 쉽지 않은 과업이라는 점

34) *Ibid.*, 111.
35) *Ibid.*, 61.
36) *Ibid.*, 62.

을 인정하였다.[37] 그는 후속하여 *The Star Sea* 사건에서 상원이 채택한 법리적 논거는 취소라는 구제수단의 엄격성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영향 받은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다만 이러한 상원의 시도가 법리 상 상당한 복잡성을 초래하였고, "상원이 사법적으로 또는 의회가 입법적으로 당해 문제를 재검토하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부수적으로 표명하였다.[38]

현재 영국의 법률상태 하에서 MIA 1906 제17조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3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39] 첫째, 법원이 제17조를 문면 그대로 해석하고,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는 선의의무의 위반이며, 따라서 구제수단으로서 계약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법원의 입장에서 취소가 일체의 선의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법원이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는 제17조 상 규정되어 있는 선의의무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결하는 것이다.

Mance LJ는 "제17조에 속박되어 있는 현재의 불완전한 법률상태에서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는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 보통법원칙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소급적인 취소와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40] 실험적으로 세 번째 접근법, 즉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제17조의 적용범주에서 제외된다는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2. 기타 구제수단

1) 사기 이후의 보상청구에 대한 거절권

전술하였듯이 영국 판례법의 입장에서 볼 때,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가 사기

---

37) *Agapitos and Another v. Agnew and Others (No. 1) (The Aegeon)* [2002] EWCA Civ. 247 ; [2003] QB 556, 1.

38) *Ibid.*, 13.

39) IP 7, para. 4.41.

40) *Agapitos and Another v. Agnew and Others (No. 1) (The Aegeon)* [2002] EWCA Civ. 247 ; [2003] QB 556, 45.

이전의 진정한 청구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명확하지만, 사기 이후의 보상청구권에 대한 사기의 효과는 다소 불명확하다. 예를 들면, 피보험자인 건물주가 홍수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날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손해가 조사되는 도중에 가옥이 화재로 인하여 붕괴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영국 판례법 상 피보험자가 사기 이후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 즉 화재손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박탈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이 문제의 취급과 관련하여 이론 상 가능한 2가지 접근법이 존재한다.[41] 첫째, 사기는 중대한 계약위반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종료권을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은 종료시점까지 존속되고, 사기가 행하여진 일자와 계약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에 기인한 일체의 보상청구권은 유효하게 인정된다. 둘째, 사기는 계약을 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고, 사기가 행하여진 이후 일체의 청구권은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명쾌하게 해답을 제공하는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국 판례법 상 사기가 계약을 자동적으로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대신, 보험자에 대하여 해당 청구에 대한 거절권 및 장래에 대하여 계약종료선택권을 제공하고, 따라서 보험자가 계약종료권을 행사하는 시점까지 계약은 유효한 상태로 존속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석된다.

2) 사기조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사기조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다. 단정적으로 말하자면 영국 판례법 상 사기조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판례법 상 MIA 1906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이 계약의 취소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전 선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존재한다.[42]

동일한 판례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

41) IP 7, para. 4.58.

42) *La Banque Financiere de la Cite v. Westgate* [1988] 2 Lloyd's Rep. 513.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London Assurance v. Clare* 사건[43]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묵시계약조항의 위반에 근거하여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조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다.

Ⅳ.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

1. 개혁의 필요성

영국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 특히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피보험자의 사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원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며, 관련 법원칙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법률위원회가 판단하는 문제점 또는 법률개혁의 필요성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44]

첫째,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로서 적용되어 온 법원칙의 비일관성은 관련 법률을 지나치게 복잡하고 난해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논쟁 및 소송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MIA 1906 제17조 상 명시되어 있는 단일의 구제수단이 판례법의 탄력적인 발전을 부당하게 제약하였다는 점에 있다. 법률위원회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과 관련하여 영국 법원이 대체로 공정한 결과를 산출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확실성 및 법리적인 일관성을 희생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둘째, 법률위원회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관한 법원칙이 사기에 대한 억지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하며, 관련 법원칙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용이해야 사기에 대한 억지수단으로써 가장 잘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45]

셋째, 법률위원회는 영국 보험법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어야 생각한다. 법원칙의 복잡성 및 난해함은 국제보험업계에서 영국 보험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보통법계와 시민법계의 보험법을 통일시키려는 국제

---

43) (1937) 57 Ll. L. Rep. 254, 270.

44) IP 7, paras. 4.76-4.80 및 7.2-7.3 참조.

45) IP 7, para. 4.79.

사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반하게 된다. 한편 법률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영국 보험법이 현재 누리고 있는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영국 자체의 보험법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방식으로 발전되어야만 한다고 판단한다.[46]

2.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

1) 선의의무와 사기방지의무의 상관관계 설정

전술한 *Agapitos v. Agnew(The Aegeon)* 사건[47]에서 Mance LJ는 최대선의원칙과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상관관계를 단절하는 잠정적인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Mance LJ는 사기방지의무가 최대선의의무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의 원칙(public policy rule)이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보통법원칙이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피보험자의 사기방지의무의 법적 근거를 형성한다는 견해를 잠정적으로 표명하였다. Mance LJ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유효한 구제수단의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하였으나,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효과는 제17조 상 계약취소가 아니라, 사기가 개입된 청구권의 상실 및 장래에 대한 보험계약의 종료라고 판결함으로써,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와 계약성립 후 최대선의의무의 상관관계를 단절하였다.

법률위원회는 최근 영국 법원의 입장과는 달리 MIA 1906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선의의무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원칙이라고 제안한다. 다만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에 대한 적용범위를 보험금청구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는 취지를 추후 개정될 제정법 상 명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의의무의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포괄적이고 비특정화된 의무로서의 성격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포괄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률위원회는 선의의무가 포괄적인 성격의 의무로서 존재하는 경우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 법원으로 하여

---

46) IP 7, para. 4.80.

47) [2002] 2 Lloyd's Rep. 42, 53.

금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무로서의 성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48] 다만 법률위원회는 선의의무가 그 자체로서 구제수단을 한정해서는 안되며, 그 대신 계약체결 전단계에서 보험계약자의 불고지 및 부실표시에 대하여 적용되는 구제수단과 계약체결 후단계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지체 및 피보험자의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구제수단은 제정법 상 별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법률위원회는 MIA 1906 제17조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개정작업은 추후에 진행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49]

2) 사기가 개입된 보상청구권의 상실

전술하였듯이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는 사기가 개입된 청구에 관한 한 청구권 전체를 상실하며, 사기가 사기 이전의 합법적인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급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현행 영국 판례법의 입장이다.[50] 판례법 상 피보험자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를 행한 경우, 당해 청구 중 사기에 해당하는 청구분뿐만 아니라, 사기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었을 진정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도 상실한다.[51]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사기를 행하는 경우 사기가 개입된 청구에 관한 한 전체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8) IP 7, para. 6.49 ; LCCP 201, para. 7.2.

49) LCCP 201, paras. 7.52-7.54.

50) *Galloway v. Guardian Royal Exchange* [1999] Lloyd's Rep. IR 209 ; *Agapitos v. Agnew (No.1)(The Aegeon)* [2002] EWCA Civ. 247 ; [2003] QB 556 ; *Axa General Insurance Ltd. v. Gottlieb* [2005] EWCA Civ. 112 ; [2005] 1 All ER(Comm.) 445.

51) 상기와 같은 판례법의 입장과 관련하여 Lord Hobhouse는 *The Star Sea* 사건에서 "사기에 의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는 진정한 손해에 대한 청구권도 상실한다는 것이 현행 법률의 입장이다 ... 이에 관계되는 논리는 단순하다. 사기를 행한 피보험자가 사기가 성공하는 경우에 이익을 얻고, 실패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여지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사기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수단을 제공하려는 영국 법원의 법률정책을 제시하고 있다(*Manifest Shipping Co. Ltd. v. Uni-Polaris Insurance Co. Ltd. and Others(The Star Sea)* [2001] UKHL 1 ; [2003] 1 AC 469, 499). 한편 Lord Hobhouse가 제시한 법원칙은 "사기는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fraus omnia corrumpt* ; *fraus omnia vitiat* ; fraud vitiates everything)는 보통법 상 공서의 원칙에 기초한다 (Malcolm A. Clarke(2002), *op. cit.*, pp. 896-897).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기존 판례법의 입장을 지지하며, 기존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보통법원칙, 즉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주구제수단은 권리상실(forfeiture)이라는 법원칙에 대하여 제정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52]

3) 계약의 종료 및 후속 청구권의 상실

현행 영국 판례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경우 보험자는 장래에 대하여 계약종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만, 장래의 보상청구권에 대한 사기의 효과는 다소 불확실하다. 특히 사기를 행한 시점과 계약종료시점 사이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법적 지위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위원회는 2010년 쟁점보고서에서 기존 판례법의 유추해석 결과, 사기가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종료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를 행한 시점과 계약종료시점 사이에 발생한 진정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53] 법률위원회는 동 보고서에서 이러한 법원칙이 통상적인 계약법원칙과 일치되며, 계약법원칙 상 계약은 종료시점 이후에 소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법률위원회는 해당 쟁점에 관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종검토보고서에서는 실무계의 견해를 수용함으로써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후속하여 진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후속하는 청구권은 상실되어야만 한다는 변경된 권고안을 제시한다. 법률위원회는 권고안의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원칙의 문제로서 사기라는 피보험자의 행위는 계약관계의 기초를 훼손하며, 따라서 보험자의 계약이행의무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져야 한다. 둘째, 현실적인 문제로서 보험자에 대하여 계약종료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법원칙은 보험자로 하여금 사소한 의심사실에 대해서도 완전한 조사를 행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사기를 주장하도록 조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54]

한편 법률위원회는 보험자가 사기사실을 인지한 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

52) LCCP 201, paras. 8.7-8.8.

53) IP 7, paras. 4.58-4.61 ; 본 논문 제3장 제2절 참조.

54) LCCP 201, paras. 7.19-7.23.

않거나, 보험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행동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보험자가 사기를 인지한 후에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기 이후의 보상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55]

4) 사기조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술하였듯이 영국 판례법 상 보험자는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조사에 소요된 합리적이고 예견가능한 비용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기망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가능성은 존재한다.[56] 한편 법률위원회는 IP 7에서 보험자가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조사에 소요된 합리적·예견가능한 비용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보험자가 사기조사비용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57]

결과적으로 법률위원회는 보험자가 사기적인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순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률위원회는 제한된 일부 상황에서만 합리적인 사기조사비용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청구권 상실이라는 구제수단이 실질적인 효과를 갖지 못하는 일부 상황, 즉 완전히 날조된 보상청구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한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보험자가 사기적인 보상청구 중 진정한 청구분에 대한 지급거절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사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배상을 받는 경우, "중복배상"에 대한 권리를 향유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조사비용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58]

5) 명시조항 상 사기에 대한 구제권의 강화 및 배제

다수 보험계약에서 사기에 대한 보험자의 구제수단을 강화하기 위하여 명시

---

55) LCCP 201, paras. 7.25 및 8.12-8.13.
56) IP 7, paras. 4.63-4.65 ; 본 논문 제3장 제2절 참조.
57) LCCP 201, para. 7.30.
58) LCCP 201, para. 7.34.

적인 "사기금지조항"(fraud clause)이 사용된다. 기업보험계약의 경우, 명시조항에 관한 법률위원회의 기본적인 시각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명확한 문언으로 작성되고 분명한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주의를 환기한 경우에만 당해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59] 따라서 보험자는 명시적인 사기금지조항 상, 예를 들면 계약취소를 포함한 구제수단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보험자는 명시조항을 통하여 사기에 대한 구제권의 축소에 동의할 수도 있다. 당해 조항은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계약상대방의 주의를 환기해야만 한다. 다만 영국 법률 상 계약에 의거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률위원회의 입장도 동일하다.

소비자보험계약의 경우, 법률위원회는 기업보험과는 상이한 접근법, 즉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법률 상 규정되는 구제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안한다. 명시조항에 의하여 사기에 대한 보험자의 구제수단이 강화되는 경우, 예를 들면 계약취소권을 행사한다고 명시되는 경우, 소비자는 취소의 법적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제수단의 강화에 상응하는 협상력의 행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법률위원회는 소비자보험의 경우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법률 상 규정된 구제권보다 강화된 권리를 보험자에게 부여하는 일체의 계약조항은 무효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제안한다.[60]

Ⅴ. 결 론

영국 법률위원회는 피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 이에 대한 특정례로써 보험금청구와 관련한 피보험자의 사기방지의무에 적용되는 법원칙의 복잡성 및 난해함이 불필요한 논쟁 및 소송을 초래하였으며, 국제보험업계에서 영국 보험법의 위상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함으로써 관련 법원칙의 개혁을 제안한다. 법률위원회는 법률의 개혁이 관련 법원칙의 복잡성을 해

59) LCCP 201, paras. 7.41 및 8.25-8.26.

60) LCCP 201, paras. 7.44-7.46 및 8.28-8.29.

결하고 법리적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관련 법원칙이 사기에 대한 억지수단으로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법률위원회의 개혁권고안을 요약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적용되던 다양한 법원칙을 배제하고, 단지 계약체결 후 선의의무가 사기방지의무에 대한 법원칙으로 작용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관한 영국 법리의 복잡성을 해결하고자 모색한다.

둘째, 피보험자의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에 대한 보험자의 주구제수단으로서 법률위원회는 기존 판례법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사기가 개입된 청구권의 박탈 및 사기 이후 보험계약의 종료권을 제안한다.

셋째, 법률위원회는 기존 판례법의 입장과는 달리, 사기조사를 위하여 보험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러한 원칙이 완전히 날조된 보험사기에 대한 억지력을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넷째, 기업보험과 관련하여 명시계약조항에 의거하여 법률 상 구제수단을 강화 또는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법률위원회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기초하여 당사자에게 협상의 자유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는 반면, 소비자보험의 경우 약정에 의한 법률 상 강화되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박세민, 영국보험법과 고지의무, 세창출판사, 2004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의 주요 개혁동향-보험자의 계약체결 후 최대선의의무를 중심으로”,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3호, 2011. 9

신건훈, “영국 보험계약법 상 최대선의의무에 관한 주요 개혁동향”, 「무역상무연구」 제49권, 2011. 2

신건훈, “영국 보험법 상 사기적인 보험금청구의 계약적 효과”,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2007. 11

신건훈, “영국 해상보험법 상 지속적인 최대선의의무의 범위”,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06. 11

Clarke, M.,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4th edn.)*, LLP, 2002

Davey, James, “Unpicking the fraudulent claims jurisdiction in insurance contract law : sympathy for the devil?”, *LMCLQ*, 2006. 5

Eggers, Peter MacDonald, “Remedies for the failure to observe the utmost good faith”, *LMCLQ*, 2003. 5

Hird, Norma J., “Utmost Good Faith - Forward to the Past”, *Journal of Business Law*, 2005. 3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Post Contract Duties and Other Issues, Consultation Paper No. 201*, 2011. 12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Reforming Insurance Contract Law : The Insured's Post-Contract Duty of Good Faith(Issue Paper 7)*, 2010. 7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Joint Review of Insurance Contract : Damages for Late Payments and the Insurer's Duty of Good Faith(Issue Paper 6)*, 2010. 3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mer Insurance Law : Pre-Contract 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Law Com. No. 319, 2009. 12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 Misrepresentation, Non-Disclosure and Breach of Warranty by the Insured, Joint Consultation Paper, LCCP No. 182, 2007. 6

Longmore, Andrew, "Good faith and breach of warranty : are we moving forwards or backwards?", *LMCLQ*, 2004. 5

Lowry, John, "Redrawing the parameters of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Current Legal Problems(Vol. 60)*, 2007

Naidoo, Andre & David Oughton, "The confused Post-formation Duty of Good Faith in Insurance Law: From Refinement to fragmentation to Elimination", *Journal of Business Law*, 2005. 5

Rose, F.D., *Marine Insurance-Law and Practice*, LLP, 2004

Soyer, Bariş, "Continuing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 still alive?", *LMCLQ*, 2003. 2

Soyer, Bariş, *Warranties in Marine Insurance(2nd edn.)*, Cavendish Publishing Ltd., 2006

Thomas, D. Rhidian, "Fraudulent Insurance Claims : definition, consequences and limitations", *LMCLQ*, 2006. 11

ABSTRACT

Main Trends for Reforming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 in England

- Focused on the Insured's Post-Contract Duty of Good Faith in relation to Claims -

Shin, Gun Hoon

In IP 7 and LCCP 201, Law Commission considers the insured's duty of good faith after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and analyse the legal implications of proposals in IP 7 and LCCP 201. The results of analysis are following. First, Law Commission propose to end the remedy of avoidance under MIA 1906 section 17, because avoidance of past claims is unprincipled, impractical and unnecessarily harsh.

Secondly, LC proposes that an insured who makes a fraudulent claim should forfeit the whole claim which the fraud relates, but that the fraud should not invalidate previous and legitimate claims.

Thirdly, LC proposes to introduce a statutory right for the insurer to claim damages for the reasonable, foreseeable costs of investigate a fraudulent claim in specific circumstances and that damages would be limited to those cases where the insurer can show an actual, net loss.

Finally, LC provisionally propose that an express fraud clause should be upheld in business insurance, whereas in consumer insurance, any term which purports to give the insurer greater rights in relation to fraudulent claims that those set out in statute would be of no effect.

Key Words : Post-Contract Duty of Good Faith, Fraudulent Claim, English Law Commission, Reform of English Insurance Contract Law